

우대사항 및 제출서류

우대사항

구분	대상	제출서류	가점
법률상 가점	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입사지원서에 보훈번호, 가점비율 등 정보 입력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	1차~3차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소정비율 ※ 소정비율 : 내부방침에 의거
특별가점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	2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	1차~3차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소정비율 ※ 소정비율 : 내부방침에 의거
자격가점	전문자격증 소지자	2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	1차 전형

[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가점부여 기준]

-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 선발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- 단, 동점자일 경우에는 선발 예정의 30%를 초과하여 합격 가능

[우대사항 세부 인정 범위]

- 취업지원대상자 범위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 -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
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- 장애인 범위 : 장애인복지법 제2조

- 자격가점
 - 우대자격

구분		인정자격증 종류
우대자격	일반	변호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, 법무사, 변리사
	건축/안전	건축시공기술사, 건축구조기술사, 건축품질시험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건축사

※ 한국산업인력공단 (건축/안전)

제출서류

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 편의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, 입사지원 시 작성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을 인정하므로 보훈번호·가점비율 등 정보입력 유의
- 장애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는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,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에서 인터넷 발급한 서류만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 인정
- 필수 및 우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자격증 관련 정보 및 자격증 증빙 서류로 진위여부를 확인